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청에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총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생산 및 활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해양기후 3개월 전망 서비스 제공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기상청 소속기관인 기상기후인재개발원에 기후업무 담당자 교육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며, 기상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기상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기상과학원에 지구대기 감시업무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기상연구사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기상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정보보호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3월 29일까지에서 2027년 3월 29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수문기상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4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상청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3월 29일까지에서 2027년 3월 29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기상청 정원 중 2명(6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2명)하며, 기상청 소속기관인 지방기상청 정원 중 29명(7급 10명, 8급 6명, 9급 13명)의 직급을 상향(6급 10명, 7급 6명, 8급 13명)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 상향 조정하여 운영중인 정원 중 2명(5급 2명)을 종전의 직급(6급 2명)으로 환원하며, 소속기관인 국가기상위성센터의 정원 중 1명(6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1명)하고, 소속기관인 기상레이더센터 정원 중 6명(6급 1명, 7급 2명, 8급 3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1명, 6급 2명, 7급 3명)하고, 기상청과 소속기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제5호 중 “검·교정업무”를 “형식승인·검정·교정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검정대행기관”을 “형식승인·검정대행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제2항 중 “기후정책과·기후예측과·해양기상과·기후변화감시과·수문기상팀”을 “기후정책과·기후예측과·해양기상기후과·기후변화감시과·수문기상팀”으로, “기후정책과장·해양기상과장·기후변화감시과장”을 “기후정책과장·해양기상기후과장·기후변화감시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기후예측, 이상기후 전망, 기후변화 감시”를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기상과장”을 “해양기상기후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해양기상”을 “해양기상·기후”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해양기상 정보의 수집·분석”을 “해양기상·기후정보의 수집·분석·생산·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제5호 중 “생산 및 관리”를 “생산·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9의2.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제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제6항제6호의2 중 “사항(제주지방기상청은 제외한다)”을 “사항”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426”을 “431”로, 일반직 계 “425”를 “430”으로,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76”을 “80”으로,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91”을 “93”으로, 기상연구사 “7”을 “6”으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432”를 “437”로, 일반직 계 “431”을 “436”으로,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81”을 “85”로,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89”를 “91”로, 기상연구사 “7”을 “6”으로 한다.

별표 5의2 중 총계 “17”을 “18”로, 일반직 계 “17”을 “18”로,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을 “4”로 한다.

별표 5의3 중 총계 “18”을 “19”로, 일반직 계 “18”을 “19”로,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을 “4”로 한다.

별표 6 중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95”를 “105”로,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

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10”을 “106”으로, 행정서기·공업서기·기상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32”를 “139”로,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기상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96”을 “83”으로 한다.

별표 7 중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51”을 “49”로 하고,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96”을 “98”로 한다.

별표 8 중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를 “5”로,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7”을 “6”으로 한다.

별표 8의2 중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를 “5”로,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8”을 “7”로 한다.

별표 8의3 중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을 “4”로,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5”를 “6”으로, 행정서기·공업서기·기상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7”을 “4”로, 기상연구사 “4”를 “5”로 한다.

별표 8의4 중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을 “4”로,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0”을 “9”로, 행정주사보·

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5”를 “14”로, 기상연구사 “4”를 “5”로 한다.

별표 8의5 중 총계 “116”을 “118”로, 일반직 계 “116”을 “118”로, 3급 또는 4급 이하 “115”를 “117”로 한다.

환경부령 제376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환경부령 제842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962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환경부령 제1063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환경부령 제753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환경부령 제906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환경부령 제1026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제1항 중 “2025년 3월 29일”을 “2027년 3월 29일”로 한다.

환경부령 제762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환경부령 제906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환경부령 제1026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3조 중 “2025년 3월 29일”을 “2027년 3월 29일”로, “2025년 3월 30일”을 “2027년 3월 30일”로 한다.

환경부령 제862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환경부령 제1026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제1항 중 “2025년 4월 30일”을 “2027년 4월 30일”로 한다.

환경부령 제962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환경부령 제1014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4조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환경부령 제376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을 제외한 별표 7의 정원 8명(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8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8명으로 본다.

② 종전의 환경부령 제962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을 제외한 별표 7의 정원 6명(행

정서기·공업서기·기상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6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기상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6명으로 본다.

③ 종전의 환경부령 제1014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을 제외한 별표 7의 정원 24명(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2명,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2명, 행정서기·공업서기·기상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0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7의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명, 행정서기·공업서기·기상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2명,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기상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0명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관측기반국) ① ~ ③ (생략)	제7조(관측기반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삭 제	⑤ -----
⑤ 계측표준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상측기의 <u>검 · 교정업무</u> 에 관한 사항	5. ----- <u>형식승인 · 검정 · 교정업무</u> -----
6.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따른 기상측기 <u>검정대행기관</u> 의 관리 및 기술지원	6. ----- <u>형식승인 · 검정 대행기관</u> -----
<u><신 설></u>	<u>6의2. 기상 · 지진장비 인증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u>
7. ~ 13. (생 략)	7. ~ 13. (현행과 같음)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8조(기후과학국) ① (생 략)	제8조(기후과학국)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후과학국에 <u>기후정책과 · 기후예측과 · 해양기상과 · 기후변화감시과 · 수문기상팀</u> 및 기후위기협력팀을 두되, <u>기후정책과장 · 해양기상과장 · 기후변화감시과장</u> 은 부이사관 · 과학기	② ----- <u>기후정책과 · 기후예측과 · 해양기상기후과 · 기후변화감시과 · 수문기상팀</u> ----- <u>기후정책과장 · 해양기상기후과장 · 기후변화감시과장</u> -----

[illegible]

③ _____
_____.

1. 기후 · 기후변화 감시 및 예
측 -----

--

1의2. ~ 10.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해양기상기후과장-----
-----.

1. 해양기상 · 기후-----

3.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7. ---- 해양기상·기후정보의

· 분석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8. ~ 15. (생략) ⑥ 기후변화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9. (생략) <신설> 10. ~ 20. (생략) ⑦ (생략) ⑧ 기후위기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 (생략) 5.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u>생산 및 관리</u> 6. ~ 10. (생략) 제11조(지방기상청) ① ~ ⑤ (생략) ⑥ 관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6. (생략) 6의2. 기상관측차량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u>사항(제주 지방기상청은 제외한다)</u> 7. ~ 10. (생략)	<u>수집·분석·생산·관리</u> --- 8. ~ 15. (현행과 같음) ⑥ ----- -----. 1. ~ 9. (현행과 같음) 9의2. <u>기후변화과학교육사 제도</u> <u>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u> 10. ~ 20.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⑧ ----- -----. 1. ~ 4. (현행과 같음) 5. ----- -- <u>생산·관리 및 활용 촉진</u> <u>에 관한 사항</u> 6. ~ 10. (현행과 같음) 제11조(지방기상청)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1. ~ 6. (현행과 같음) 6의2. ----- ----- <u>사항</u> 7. ~ 10. (현행과 같음)
--	--

⑦ (생 략) 환경부령 제376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생 략)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u>별표 7의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0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10명으로 본다.</u> 환경부령 제753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	⑦ (현행과 같음) 환경부령 제376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현행과 같음) <u><삭 제></u> 환경부령 제753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
--	--

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된 정보보호팀은 2025년 3월 29일까지 존속한다.

② (생 략)

환경부령 제762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4의 행
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
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정원 중 1
명은 2025년 3월 29일까지 존속
하며, 2025년 3월 30일 이후에
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
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
는 방송통신주사 1명으로 본다.

환경부령 제862호 기상청과 그 소
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 2027년
3월 29일-----.

② (현행과 같음)

환경부령 제762호 기상청과 그 소
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간) -----

--- 2027년 3월 29일-----
--- 2027년 3월 30일 -----

-----.

환경부령 제862호 기상청과 그 소
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
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
로 신설된 수문기상팀은 2025년
4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② (생 략)

환경부령 제962호 기상청과 그 소
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생
략)

② 종전의 환경부령 제693호 기
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
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
로 환원되는 정원을 제외한 별
표 7의 정원 19명(행정서기·공
업서기·기상서기·시설서기·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9
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
속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

----- 2027년
4월 30일-----.

② (현행과 같음)

환경부령 제962호 기상청과 그 소
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현행
과 같음)

<삭 제>

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기상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9명으로 본다.

③ (생략)

환경부령 제1014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생략)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7의 정원 40명(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2명,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8명, 행정서기·공업서기·기상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0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7의

③ (현행과 같음)

환경부령 제1014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현행과 같음)

<삭제>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기상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2명, 행정서기 · 공업서기 · 기상서기 · 시설서기 ·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8명,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기상서기보 · 시설서기보 ·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0명으로 본다.

③ (생략)

④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8의4의 정원 5명(행정주사 · 공업주사 · 기상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2명,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기상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8의4의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기상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명, 행정서기 · 공업서기 · 기상서기 · 시설서기 ·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u>명으로 본다.</u>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3]

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426</u>	<u>431</u>	+5
·	·	·	
·	·	·	
일반직 계	<u>425</u>	<u>430</u>	+5
·	·	·	
·	·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기상 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 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76</u>	<u>80</u>	+4
·	·	·	
·	·	·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기상 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 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u>91</u>	<u>93</u>	+2
·	·	·	
·	·	·	
기상연구사	<u>7</u>	<u>6</u>	-1

	.	.	.	
	.	.	.	

[별표 4]

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432</u>	<u>437</u>	+5
•	•	•	
•	•	•	
일반직 계	<u>431</u>	<u>436</u>	+5
•	•	•	
•	•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기상 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 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81</u>	<u>85</u>	+4
•	•	•	
•	•	•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기상 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 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u>89</u>	<u>91</u>	+2
•	•	•	
•	•	•	
기상연구사	<u>7</u>	<u>6</u>	-1
•	•	•	



[별표 5의2]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2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17</u>	<u>18</u>	+1
일반직 계	<u>17</u>	<u>18</u>	+1
·	·	·	
·	·	·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 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 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u>3</u>	<u>4</u>	+1
·	·	·	
·	·	·	

[별표 5의3]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2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8</u>	<u>19</u>	+1
일반직 계	<u>18</u>	<u>19</u>	+1
·	·	·	
·	·	·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 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 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u>3</u>	<u>4</u>	+1
·	·	·	
·	·	·	

[별표 6]

지방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3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 ·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u>95</u>	<u>105</u>	+10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 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 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u>110</u>	<u>106</u>	-4
행정서기·공업서기·기상서기 ·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u>132</u>	<u>139</u>	+7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기상 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 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u>96</u>	<u>83</u>	-13
·	·	·	
·	·	·	

[별표 7]

지방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3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 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 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	· · <u>51</u> ·	· · <u>49</u> ·	-2
·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 ·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 ·	· <u>96</u> · ·	· <u>98</u> · ·	+2

[별표 8]

국가기상위성센터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4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 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 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 · <u>4</u>	· · <u>5</u>	+1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 ·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 신주사	<u>7</u>	<u>6</u>	-1
· ·	· ·	· ·	

[별표 8의2]

국가기상위성센터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4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 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 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 • <u>4</u>	• • <u>5</u>	+1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 ·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 신주사	<u>8</u>	<u>7</u>	-1
• •	• •	• •	

[별표 8의3]

기상레이더센터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5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 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 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3</u>	<u>4</u>	+1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 ·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u>5</u>	<u>6</u>	+1
·	·	·	
행정서기·공업서기·기상서기 ·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u>7</u>	<u>4</u>	-3
·	·	·	
·	·	·	
기상연구사	<u>4</u>	<u>5</u>	+1
·	·	·	

[별표 8의4]

기상레이더센터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5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 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 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3</u>	<u>4</u>	+1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 ·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u>10</u>	<u>9</u>	-1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기상 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 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u>15</u>	<u>14</u>	-1
·	·	·	
·	·	·	
기상연구사	<u>4</u>	<u>5</u>	+1
·	·	·	

[별표 8의5]

국립기상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6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16</u>	<u>118</u>	+2
일반직 계	<u>116</u>	<u>118</u>	+2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15</u>	<u>117</u>	+2